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정·주의 요구

제 목 농산물산지유통시설(APC)지원 사업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, 아산시

내 용

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·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(APC)을 아래 [표1]과 같이 추진하였다.

[표1] 2016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

사 업 대상자	지원조건	사업예산(단위 : 천원)				주요사업
		계	국비	지방비	자부담	
○○○○○○조합 (대표 ○○○)	국 비 30% 지방비 30% 자부담 40%	1,900,000	570,000	570,000	760,000	- APC 증축 및 리모델링 - 유통시설장비(지게차 등)

1.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선금급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

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 및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4조¹⁾의 규정에 따르면 선금급은 그 성질상 선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사,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1) 선금급 관련 조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3조(선금급과 개산금)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6조(선금급)가 각각 2016. 5. 29.과 2016. 11. 29. 삭제됨에 따라 동일자로 제정되었음

또한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²⁾에 따르면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○○농협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(국고 및 지방비)에 대해 선금급을 지원하면서 2016. 3. 28. 사업계획 방침을 받고 2016. 3. 30. 총 사업비 중 상기 [표1]과 같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에 해당하는 1,140,000천원을 선금급으로 일시에 지급하였다.

2.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부당 지급

아산시 ○○농협은 2016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분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제안서평가회를 3회(2016. 6. 7, 2016. 6. 21, 2016. 7. 12.)에 걸쳐 개최하였다.

제안서평가회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업대상자의 제안서에 대해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문가, 담당 공무원 등 8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회를 개최할 때마다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.

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³⁾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

2)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, 2017. 9. 25. 개정) IV.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[3] 지방보조금 교부 중 ○ 교부방법 :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,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

3)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 III. 비목별 지침 1. 운영비(210목) 1-1. 일반수용비(210-01목) 사.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,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에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.

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평가위원으로 사업담당 공무원이 포함되었다면 평가 참여 담당 공무원은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○○○○과 사업담당 공무원이 제안서 평가회에 참석하여 아래 [표2]와 같이 평가위원 수당 1,003,800원을 지급하였다.

[표2] 담당 공무원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

계	'16.6.7.	'16.6.21.	'16.7.12	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
1,003,800원	334,600	334,600	334,600	○ ○ ○ ○ (아산시 ○ ○ ○ ○ 과 ○ ○ 6급)

※ 평가위원 수당 : 350,000원(원천징수 시 334,600원)

3. 사업 추진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

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「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」(농림축산식품부)에 따라 아래 [표3]과 같이 사업신청부터 사업자 선정,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.

[표3]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추진 절차

사업신청단계	사업자 선정단계 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aT)	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
사업자 → 시·군 → 시·도 →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→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→ 서 면평가 → 발표평가 → 예비대상자 선정 → 사업비 심의·조정	→ 사업자(세부계획수립) → 시·군(승인) → 시·도 (보고) → 사업시행 → 정산

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각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은 그 내역과 그에 따른 소요비용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아산시 ○○농협 또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여야 한다.

그리고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단계의 심의 결과 등을 참조하여 세부 사업별 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년 ○○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중 소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아래 [표4]와 같이 사업비 조정·심의 단계에서 감액 조정하였고, ○○농협은 시행단계에서 심의금액보다 626% 높게 설계가 되었음에도 총 사업비의 15% 범위내에서는 자체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아산시 또는 한국농수산○○○○공사(○○)와 협의 없이 자체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였다.

[표 4]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중 소방시설 사업비 변동내역

구 분	○○심의 (계획)	○○심의 (계획수정)	설계 (사업비수정)	설계검토 (○○○○회)	정산	비고
	‘15.9.1.	‘15.10.2.	‘16.3.20.	‘16.4.11.	‘17.2.14.	
소방시설 사업비	32,000	23,500	147,202	125,983	73,730	

그 결과 아산시 ○○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중 소방시설 사업비는 심의와 설계, 정산 과정에서 300~600%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떤 금액이 타당하고 정확한 사업비인지 구분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장은

[시정] 아산시 ○○농협에 대한 2016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산시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,003,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선금급 및 수당지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

업계획 및 설계, 정산 등에 대한 사업관리를 면밀히 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지사는

[통보] 관내 시·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선금급 지급과 관련하여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에 따라 공사 실적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사비가 일시에 지급되어 사업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, 특히 예산요구계획 수립 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·군 사업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